

인천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나35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나359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8 선고 2018가소627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0. 6. 23.

판결 선고 2020. 9. 1.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8. 선고 2018가소627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4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피고는 자기 소유의 C회사 D 대형특수차량 1대(25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 설정된 할부잔금 16개월분 28,531,520원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원고는 동 차량을 인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합의 내용

1. 원고는 위 차량을 피고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위 할부대금 전액을 채무자로서 인수하고 동 금액이 정산된 이후에는 명의이전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약정에 동의하여 본인의 차량을 인계한다. 단 위 할부금 정산이행 이후에 명의이전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위 매월 할부금 1,783,220원 전액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고 차를 반환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2018. 7. 24.경 수리를 위하여 위 차량을 F에 입고하기까지 주식회사 C의 지입기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주식회사 G의 운송업무를 하면서 피고 명의로 된 H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도 함께 교부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통장을 통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운송수익금을 지급받는 한편 위 운송수익금으로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E에 이 사건 차량의 할부대금 잔금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통보: 금일부로 해고를 정식 통보합니다. 차량 짐 정리하고 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반환받아 위 F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7. 2.까지 E에 이 사건 차량의 할부잔금 중 5개월분 합계 8,916,100원(= 월 1,783,220원 × 5회)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차량의 할부잔금 16개월분 28,531,520원(= 월 1,783,220원 × 16회)으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가 위 할부잔금 전액을 지급한 이후 이전¹⁾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차량 매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게 위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피고 측에게 반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8. 7. 2.까지의 기지급 할부잔금 합계 8,910,000원(= 월 1,782,000원 × 5회,²⁾ 이하 '이 사건 할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험료, 지입료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보험료 및 지입료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할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②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1,470,160원의 정산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E에 이 사건 할부금을 납부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할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할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및 통장을 사용하고 있던 2018. 5. 16. 이 사건 통장에 차량 사고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4,900,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일부, 보험료 및 지입료 등 납부 명목으로 소비한 사실, 원고가 2018. 7. 24. F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비가 1,390,000원인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미납한 지입료 등 합계가 2,029,11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리비 및 미납 지입료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이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은 피고의 I은행 계좌로 2018. 7. 25. 원고의 2018. 6.분 운송수익금 6,374,012원, 같은 해 8. 27. 원고의 2018. 7.분 운송수익금 4,739,803원 합계 11,113,815원(= 6,374,012원 + 4,739,803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이 법원 2020. 5. 26.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 일부를 위 운송수익금으로 대신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보험금 4,900,000원을 수령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민법 제741조 참조), 피고가 자신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 일부를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위 운송수익금 합계 11,113,815원이 위 수리비 및 미납 지입료 합계

3,419,110원(= 1,390,000원 + 2,029,110원)보다 더 큼이 계산상 명백하여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계산으로 위 수리비 및 미납 지입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 4,900,000원 반환채권과 위 수리비 및 미납 지입료 합계 3,419,110원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위 정산금 채권 중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4,330,500원의 절반인 2,165,250원에 대한 약정금 채권 및 기타 나머지 정산금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행하여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2018. 2. 8.부터 이를 반환한 같은 해 7. 2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데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상당액은 차량의 가격 내지 시가에 기대이율을 곱하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의 가격 내지 시가는 원·피고 간의 매매대금 상당인 28,531,520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산정에 적용할 기대이율은 금융기관의 차량할부 대출금리, 일반 시중 금리, 통상적인 거래의 이윤율, 법정이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차량의 임료 상당액인 783,249원(= 28,531,520원 × 0.06 × 167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8. 7. 24.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19. 5.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준비서면이 같은 달 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할부금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26,751원(= 8,910,000원 - 783,24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소영

판사임진수

판사신정수

1)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2.까지 E에 지급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잔금 5개월분 합계는 8,916,100원이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재 및 실제 납부내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이 E에 납부한 월 할부대금을 1,782,000원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도 원고가 납부한 위 할부잔금 5개월분 합계 금액을 8,910,000원(= 월 1,782,000원 × 5회)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제1심법원의 인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